

새 출판진흥법 제정 둘러싸고 출판계 분주

출판 관련업을 산업의 개념으로 수용할 법적 장치 마련

출판문화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출판진흥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출판진흥과 이상득 사무관은 “새로운 세기에 지식문화산업은 더욱 중시될 것이다. 출판진흥법은 시대에 맞는 출판문화산업을 진흥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의 초석은 연구용역을 받은 출판문화학회(책임연구원 전영표 신구전문대출판과 교수)가 다지고 있다. 기준 법을 통폐합하는 만큼 출판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가운데 문광부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을 밝혀 나름대로 세부안 마련에 분주하다.

출판산업 지원 차원의 법안 마련

문광부는 지난 1월 말 ‘출판진흥법 제정안 용역 시행’을 위해 각 출판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연구용역 추진지침에 밝힌 연구목적 및 방향은 ‘종래 규제 차원의 단편적인 법률로 분산돼 있는 출판 관련 법체계를 정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출판·인쇄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단일 법률로 일원화’ 한다는 것.

출판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선진외국의 주요 제도나 법령 가운데 우리나라에 적용할 사안 적출, 도서정가제 의무 규정 여부 검토, 도서상품권 발행 경쟁 제한 및 소비자 보호 사항 규정 여부 검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9장 독서진흥부분의 출판진흥법 통합 여부 검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출판금고 및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립 근거 규정 검토, 출판·인쇄연구소 통합 설립 근거 규정 검토, 출판·인쇄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 기타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작한 출판진흥법 제정은 새로운 출판환경에 맞는 법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주도하고 있는 전영표 교수는 출판진흥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출판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3년까지 2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둘째 정부차원에서 서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SBN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셋째 출

출판문화산업의 의미를

선명히 부각시킬 출판진흥법(안) 마련에

출판계와 학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출판문화학회가 용역을 맡아

법안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에서는 12개 관련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구체적인

안을 학계와 조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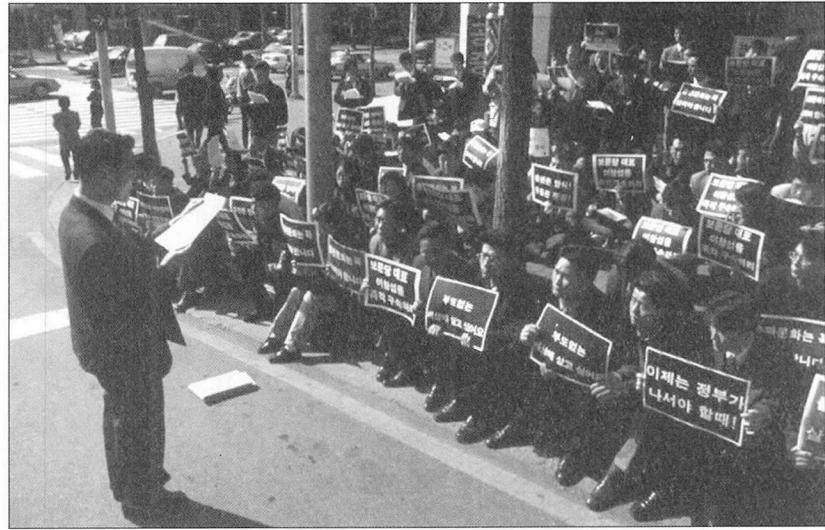
판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인쇄산업의 육성 책을 마련하고, 넷째 <청소년 보호법>의 수용, 다섯째 아시아문화정보센터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그밖에 규제 성격이 강한 법안을 풀고 보완해 출판문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출판문화학회는 이같은 취지를 담은 설문지를 학계와 출판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230여 곳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한 학회는 7월 초 학계·출판계·인쇄계 등 6명의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8월초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교수는 “출판진흥법은 출판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 올바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인쇄업계의 의견 수용 바람

출판 관련단체는 나름대로 안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금고, 출판인회의 등 12개 출판 관련 단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나춘호 ‘출협’ 회장)를 결성하고, 산하에 정책기획 위원회(위원장 한철희 돌베개 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출판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6월 10일까지 각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 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철희 위원장은 “기존 법률의 규제적인 조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출판을 산업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법안을



지난해 도매상 연쇄부도 등 큰 어려움을 겪은 출판계가 새로운 법안 마련을 계기로 출판의 역사와 권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출판기금 조성, 출판진흥재단 설립, 관련 기관의 시설 운영을 지원할 방안 마련, 둘째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셋째 창작·번역 등의 활성화, 넷째 출판사 육성, 다섯째 유통업계 지원, 여섯째 출판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유통의 한 부분으로 담고, 출판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쇄업은 분리하는 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음란물 규제를 위한 만화·사진집 등의 납본 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사적인 복사·복제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장치도 검토할 생각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출판문화학회에 용역을 맡긴 만큼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사전에 학회와 조율을 거칠 생각이다. 한위원장은 “출판계의 의견과 학계의 의견이 집약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쇄업계는 출판과 인쇄를 분리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부장은 “출판과 인쇄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운영·생산체계가 전혀 다른 만큼 법안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식정보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치가 미흡해 정책·세제·금융 등에서 소외당했다고 주장하는 업계는 신법에 인쇄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선 인쇄소의 ‘소(所)’ 자를 ‘사(社)’ 자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다. 상행위를 위해 설립

한 업체에 ‘소’ 자를 붙여 인쇄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쇄업이 출판업의 한부분으로 오인되는 불이익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또한 인쇄업의 보호와 육성 및 지원, 지식문화산업으로의 명문화, 인쇄영역의 확대, 관련 단체에 대한 이양·인쇄공단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인쇄진흥기금 설치, 세제 및 자금 지원, 시·도 행정기관 발간실 인쇄금지, 대한인쇄연구소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행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중요

출판문화산업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출판진흥법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 듯 새로운 출판환경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무엇보다 실행이 가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94년에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사문화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관련업계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판평론가 이중한씨는 “출판의 역사와 권위를 되살리는 일은 출판계의 몫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출판문화산업의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곱씹어 생각할 일이다.

—오완진 기자